

「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2년 11월 15일 심현정 의장이 발의하고, 2022년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.

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(2023~2026)에 대한 의정비심의 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[별표 2] 월정수당 지급기준 수정(안제3조제1항제2호관련)

가. 2023년: 월2,323,000원

나. 2024년 ~ 2026년: 전년도 월정수당 + (전년도 월정수당 ×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)

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 개정은

평창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금액(2023~2026)에 대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결과,

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.